

세계

FIFA, 월드컵 불법 스트리밍 채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사하다

유현우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국제 축구 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이하 ‘FIFA’)은 최근 2018 러시아 월드컵 기간 중 무단으로 월드컵 방송 신호를 송출하여 월드컵 경기 영상을 불법 스트리밍 하는 저작권 침해 채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사함. 최근에는 소니가 인도의 법집행 기관인 MarkScan과 함께 협력하여 인도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대해서 2018 러시아 월드컵 경기 영상을 불법으로 방송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세계 전역에서 월드컵 경기 영상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개요

- 2018년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2018 FIFA 월드컵 대회(The 2018 FIFA World Cup)가 러시아에서 개막되어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이하 ‘FIFA’)과 FIFA의 파트너 및 공식후원사들은 월드컵 경기 생중계 방송을 온라인으로 불법 스트리밍 하는 다수의 채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함.

FIFA의 성명 발표

- FIFA는 2018년 6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반을 둔 위성 사업자 beoutQ^{<1>}가 월드컵 기간 중 Arabasat 인공위성을 통해 월드컵 공식 방송사인 NBC와 beIN으로부터 월드컵 방송 신호를 무단 송출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iddle East & North Africa, ‘MENA’) 전역에 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에 불법 스트리밍 함으로써 FIFA 및 파트너와

<1> beoutQ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기반을 둔 위성 사업자로서 카타르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17년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콜롬비아와 쿠바의 합작법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배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우디 왕실의 미디어 고문인 Saud Al Qahtani 장관에 의해 적극적으로 홍보되면서 사업을 점차 확장하고 있음.

공식후원사들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이들을 비난하는 동시에 이들의 침해 행위에 주목하고 있음을 밝혔음.

- 또한 FIFA는 2018년 6월 3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불법 채널들이 FIFA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들에 대한 단속 조치를 비롯한 자신들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최근 스포츠 경기 영상 침해 동향

- 최근 뉴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셜 미디어 및 스트리밍 사이트 등의 새로운 매체를 통한 권리 침해가 급증하고 있음.
 - 스포츠 경기 주최자를 비롯한 권리자들은 무단 스트리밍 행위를 경고하는 사전 통지를 보내고, 소셜 기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행위를 단속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콘텐츠들에 대해 일일이 게시중단(take down)을 요청하고 사전예방조치(pre-preemptive action)를 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2>.
 - 더욱 문제되는 것은 최근 스포츠 경기 영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몇몇 악의적인 위성 사업자(satellite operator)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국영방송국(state-supported broadcaster)과 관련된 곳에서도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등 스포츠 경기를 둘러싼 권리 침해 행위는 전 세계적 정치의제(geopolitical agenda)로 대두되고 있음.
- 한편 Infantino FIFA 회장은 월드컵을 비롯한 클럽 월드컵(Club World Cup)과 세계 국가 리그 (World Nations League)의 개편을 위한 상업적 권리(commercial rights)를 위해 250억 달러(한화 약 27조 8,125여억 원)에 달하는 새로운 자금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3>.
 - 그러나 FIFA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퇴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면 칠수록 FIFA의 수익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2> 유현우, “유럽축구연맹, 축구 경기 생중계 불법 스트리밍 엄중 단속”,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6호,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 70-72면.

<3> FIFA는 이를 위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을 48개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상업적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확대 및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FIFA와 FIFA의 파트너 및 공식 후원사들의 노력

- FIFA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가장 문제되고 있는 beoutQ의 채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부 간 위성 사업자인 Arabasat의 위성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주식의 약 36.6%를 사우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beoutQ는 이와 같이 사실상 국영방송국(state-supported broadcaster)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포츠 경기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
 - 위성사업자 Arabasat의 경우에도 FIFA 공식 방송사 중 하나인 beIN은 2017년 12월부터 beoutQ가 Arabasat의 위성을 통해 beIN이 구매한 미디어 콘텐츠를 불법 전송하는 행위를 중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Arabasat는 beIN과의 협력을 거부해왔음.
- 이에 beIN은 무단 방송 신호 송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 복제 방지 조치(anti-piracy measures)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한편 인도에서는 FIFA의 공식 후원사인 소니가 인도의 법집행 기관인 MarkScan과 함께 협력하여 인도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에 대해서 2018 러시아 월드컵 경기 영상을 불법으로 방송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FIFA와 FIFA의 파트너 및 공식 후원사들은 세계 전역에서 월드컵 경기 영상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시사점

- 최근 FIFA등 축구 관련 스포츠 경기 주최자들은 축구 경기 방송을 무단으로 스트리밍 하는 사이트 및 채널들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영국 축구협회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경기 영상을 불법적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 목록 및 링크를 제공한 포털 사이트 ‘FirtRow Sports’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013년 7월 16일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ISP들에게 문제 된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명령한 바 있음^{<4>}.
- 최첨단 ICT 기술과 스포츠 이벤트의 결합으로 인해 스포츠 경기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핵심 콘텐츠인 스포츠 경기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음^{<5>}.

<4> 유현우, “유럽축구연맹, 축구 경기 생중계 불법 스트리밍 엄중 단속”,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6호,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 72면.

<5> 유현우 · 이신,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권접관에 대한 연구 -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 cuique suum -”, 제7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년.

- 최근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권접권 도입 논의도 이와 같은 스포츠 경기 콘텐츠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6>}.

*** 참고 자료**

<https://bit.ly/2N0aRXE>

<https://bit.ly/2t8izYg>

<https://bit.ly/2zhSOdm>

<https://bit.ly/2y2lC99>

<https://bit.ly/2lv09fV>

<https://bit.ly/2y2lC99>

<6> 박희영,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권접권 도입론”, 「저작권 동향」 제2012-1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년.

미국

법원,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기 위하여 스타워즈 영화의 이미지와 대사를 사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아트로센터 디렉터)

타인의 저작물에서 인용된 분량이 해당 저작물 전체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사실 관계

-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인 피고는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가상의 게임을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판매함. 피고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기 위하여 ‘스타워즈’의 이미지, 대사, GIF 그림파일을 게시하면서 ‘스타워즈’를 주제로 한 해쉬태그와 캡션을 추가함.
- ‘스타워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사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년 12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저작물의 극히 미미한 분량을 이용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또한 피고는 설사 이러한 사소한 이용(de minimis)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 2018년 6월 29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가상의 게임을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홍보를 위하여 영화의 이미지와 대사를 이용하고 GIF 그림파일을 만들어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함.<1>

<1> Lucasfilm Ltd. LLC, et al. v. Ren Ventures Ltd., et al., 3-17-cv-07249 (N.D. Cal. June 29, 2018).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상표권 침해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음.

- 피고가 몇 시간 분량의 원고의 저작물에서 일부 이미지와 대사를 이용하였고 짧은 분량의 GIF 그림파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소한 이용의 항변이 인정될 수 없음.
 - 사소한 이용의 항변은 평균적 관객이 차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평균적 관객이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사소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임.
 - 피고가 자사의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면서 ‘스타워즈’ 자료와 해쉬태그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피고가 해당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스타워즈’와 연관 지어 인식할 잠재적 소비자들을 염두에 두었음을 암시함.
-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인 이미지와 대사를 게시하면서 이 중 아주 일부만 잘라내고 헤드라인이나 캡션을 포함시켰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용에는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공정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가 원고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맥락인 게임 어플리케이션에서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게다가 피고는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의 이용이 불공정한 전용이라는 점을 암시하며 이는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원고의 저작물은 창작적 성격을 가진 공표된 저작물이라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원저작물이 창작적 성질의 저작물과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함.
 - 원고의 저작물은 정보제공적 저작물이 아닌 창작적 성질의 저작물로 온라인상 수많은 곳에서 볼 수 있으며 거의 40여 년에 걸쳐 극장에서 상영되었음.
- 피고의 GIF 그림파일은 짧은 캡션이 포함된 2초 분량의 비디오 클립으로 원고의 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양적으로 사소하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함. 설사 해당 그림파일이 원고의 저작물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인 ‘스타워즈’의 세계의 주요 캐릭터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2초 동안 이들을 보여주는 피고의 행위를 상당한 이용으로 볼 수는 없음.
- 원고의 저작물 대신 피고의 GIF 그림파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해당 그림파일이 원저작물의 2차적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공정 이용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스타워즈’와 같은 프랜차이즈 영화에 대한 지식재산권자들은 해당 영화와 관련된 상품화와 제품 개발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저작물과 관련된 수익을 창출함.

- 타인의 저작물 이용 행위가 변형적이지 않은 경우 시장에 미치는 손해가 추정될 수 있음. 게다가 피고는 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게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저작물의 대사와 이미지를 사용하였음.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하는 시장의 손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평가 및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은 공정 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변형성 여부와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임을 확인함.
- 이번 판결은 설사 타인의 저작물에서 인용된 분량이 해당 저작물 전체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변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함.
-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배심원단의 평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N7LmUu>

<https://bit.ly/2lOTMUV>

미국

**법원,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유현우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2018년 6월 11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Claude M. Hilton 판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 성격의 웹사이트에서 이용한 행위도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진작가들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저작권 학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등 향후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사실 관계

- 사진작가 Russell Brammer는 우연히 자신이 Washington DC의 Adams Morgan 지역을 길게 노출하여 찍은 사진(long-exposure photos)이 자신의 허락 없이 북부 버지니아 영화제(Northern Virginia Film Festival)의 웹사이트 내 Washington DC에서 해야 할 일(things to do) 페이지에서 사진의 일부가 잘린(cropped)채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
- Brammer는 이후 영화제를 후원하는 회사 Violent Hues Productions에게 자신의 사진을 즉시 웹 페이지에서 게시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냄.
- 동 회사는 Brammer의 게시중단 요청에 문제 된 사진을 즉각 웹사이트에서 내렸지만 Brammer는 자신의 사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동 회사를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공정이용 항변을 주장하였음.

공정이용 법리

-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1>}에서는 비영리적이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용된 부분이 원 저작물의 상당한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정이용 판단 요소

- 1) 그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
- 2)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 3)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 4) 그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판단**

○ 2018년 6월 11일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Claude M. Hilton 판사는 특히 원고가 이전에도 동일한 사진을 원고의 저작물이라는 표시 없이 온라인상에 게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피고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원고의 사진을 영화제의 홈페이지에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 법리’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도 원고의 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이용의 목적과 성격

- 법원은 i) 피고가 비록 원고의 사진 이미지를 상업용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상품을 광고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영리적인 이용에 해당하고, ii) 원고가 문제의 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홍보의 목적과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에 반해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것은 축제 참가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전달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 iii) 피고의 사진 이용 행위는 기능과 목적이 변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는 변형적(Transformative)·비영리적(Non-Commercial)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1> 17 USC 107

제106조와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제106조와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그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
- (2)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 (3)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 (4) 그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발행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이용이라는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 임원선, 「미국 저작권법」, 저작권관계자료 2010-0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년.

○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 법원은 i)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찾았고, ii) 문제된 사진에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iii) 원고의 게시중단 요청에 피고는 즉각적으로 웹사이트에서 문제의 사진을 내렸다는 점 등을 고려함.
- 또한 법원은 i) 원고의 사진에는 조명 및 셔터의 속도 선택 등 창의적인 요소가 일부 포함되었지만 Washington DC의 Adams Morgan 지역의 실제 위치(real-world location)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사진에 불과하여 ‘창의적(creative)’이라기보다는 ‘사실적(Factual)’인 사진에 가깝고 ii) 피고도 문제의 사진을 영화제 참석자들에게 Adams Morgan 지역을 설명하기 위한 순전히 사실적인 내용(factual content) 전달을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함.

○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 법원은 i) 피고가 웹사이트에서 이용한 사진은 원고 저작물의 절반 정도를 잘라내어 편집한 것에 불과하고, ii) 피고는 문제의 사진을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만 이용하고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는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이용한 부분이 원고 저작물의 전체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의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시함.

○ 그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은 피고의 사진 이용으로 인해 원고가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사진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는 피고의 사진 무단 이용 시점 이후에도 사진의 인쇄 판매 및 이용허락 등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았고, 피고가 사진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 사진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았음.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 대해서 플로리다 주(州) 노바 사우스 이스턴 대학(Nova Southeastern University)의 저작권 담당자(copyright officer) Stephen Carlisle은 ‘머리를 긁적이게 하는 판결(head scratching decision)’이라고 평가함.
- 법원이 원고가 저작물이라는 표시 없이 문제된 사진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게재한 사실을 원고에 불리하게 판단한 것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예술적으로 표현된 모든 저작물은 유형 매체에 고정되는 순간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규정한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2>에 반하는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함.

- 또한 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다면 앞으로 사진작가들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내었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게시중단하면 피고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긴 하였으나 이번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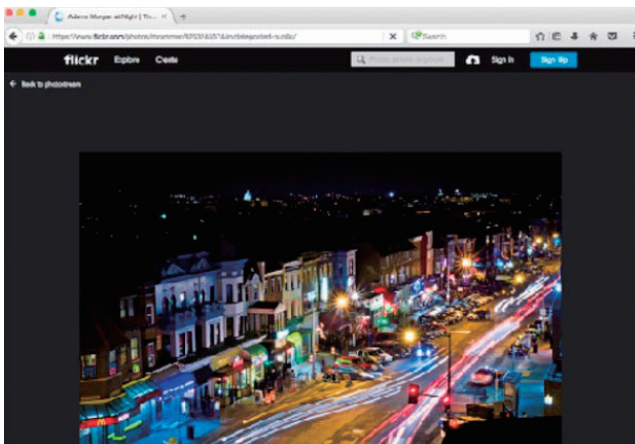
*** 참고 자료**

<https://bit.ly/2z8D78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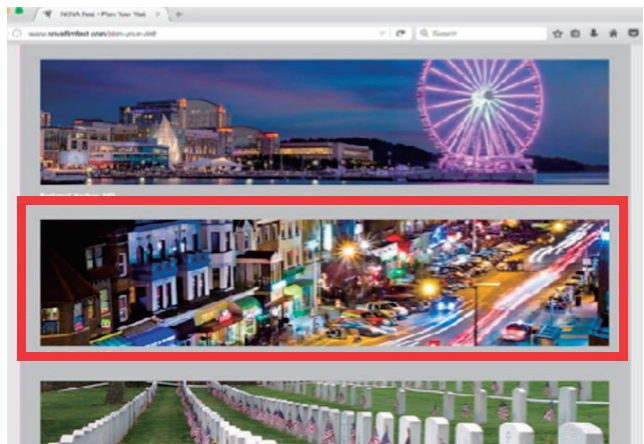
<https://engt.co/2KMhPP9>

<https://bit.ly/2NUMkEQ>

*** 참고 이미지**



원고 Brammer의 사진 이미지
(*참조 - <https://bit.ly/2z8D78o>)



피고가 이용한 원고의 사진 이미지
(*참조 - <https://bit.ly/2z8D78o>)

<2> 17 USC 102 (b)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이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임원선, 「미국 저작권법」, 저작권관계자료 2010-0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년.

미국

묵시적인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자사이의 관행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최푸름 (University of Debrecen, LL.M)

미국 법원은 당사자 간의 배타적인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관행이나 구두 계약을 통해 묵시적인 저작권 이용허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저작물 이용 갱신료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갱신료 지불에 대한 확약이 없었다면 이는 묵시적인 저작권 이용 허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배경

- 원고는 그래픽 디자인 회사이고 피고는 채용 공고를 올리는 웹사이트임. 2008년 10월 1일, 원고는 피고와의 저작물 이용 서면 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었음 (이하, ‘2008년 계약’). 계약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원고의 모든 그래픽 디자인 저작물은 피고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사가 필요로 하는 그래픽 디자인의 50% 이상을 수주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채용 공고나 이력서 등록 서비스 등을 제작한 후,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함.
- ‘2008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원고와 피고는 해당 계약을 갱신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서로의 의무를 다 함. 지난 6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2,000개가 넘는 저작물을 제공해 왔고, 피고는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 옴. 그러나 해당 계약 만료로 인해 두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 계약 관계로 묶이지는 않았음. 따라서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이에 대해 ‘묵시적 이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원고에 따르면 ‘묵시적인 저작물 이용 허락’의 전제는 저작물 하나하나에 대한 갱신료를 매년 지불하는 것임.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채용 공고를 갱신하면서도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갱신료를 지불할 책임을 다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철회 사유라고 강조함. 이에 따라, 원고는 2014년에 계약 철회를 주장하고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신의 저작물을 모두 내리도록 요구함. 하지만 갱신료에 대한 사항은 ‘2008년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실 관계

- 피고는 피고의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모두 내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저작물 이용 갱신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며 계약 위반, 저작권 침해 그리고 부당 이익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2017년, 지방 법원은 두 당사자 사이에 ‘저작물 목시적 이용 허락’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 또한, ‘2008년 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저작물 이용에 따른 갱신료를 지불하는 데에 동의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함.

쟁점

-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저작권 양도나 이용 계약이 당사자 일방에 의해 자동적으로 갱신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2008년 계약’에 따른 ‘목시적 이용’을 허락해 주었다고 가정할 때, 갱신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해왔던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관련 규정과 판례법

- 미국 저작권법 제204조(a)항은 저작권의 양도는 법률의 효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증서 또는 양도에 관한 각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2009년, *Ali v. Final Call* 판결에 의하면^{<1>}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서면 계약을 통해 배타적 이용 허락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구두 계약을 통해 비배타적이고 ‘목시적인 이용 허락 계약’을 할 수 있음. ‘저작권의 목시적 이용 허락’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계약 당사자는 a) 이용 허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창작을 요청한 사실과 b) 저작자가 요청 받은 저작물을 창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c) 저작자는 이용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자신의 저작물에 복제 및 배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1> *Ali v. Final Call, Inc.*, No. 15-2963 (7th Cir. 2016).

-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묵시적이고 비배타적인 이용 허락을 할 수 있음^{<2>}. 또한 배타적 이용 허락과는 달리, 비배타적 이용 허락은 구두로도 가능하며 심지어 두 당사자 사이의 관행에 의해 맺어질 수도 있음^{<3>}.

판결

- 2018년 5월 8일, 미국 항소 법원은 사실 관계와 판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묵시적인 이용 허락 계약’ 관계라고 판시함. 피고는 a) 원고에게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될 저작물의 창작을 요청하였고, b)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저작물을 창작하였으며, c) 자신의 저작물이 피고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복제, 전송 (맥락 상 Ali v. Final Call 판결의 배포는 전송으로 해석되어야 함)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08년 계약’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계약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다 하였음. 따라서 두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이용 허락 계약’이 인정되며 결과적으로 ‘2008년 계약’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 사실은 저작권 침해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함.
- 원고가 주장한 갱신료에 대해서는 ‘2008년 계약’에서 언급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해당 계약서를 통해 두 당사자가 매년 갱신되는 저작권 이용료 지불에 대해 상호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평가 및 전망

- 이 판례는 저작권자의 ‘묵시적인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의 좁은 해석을 경계하고, 피고와 같이 계약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권리를 판례법상으로 명문화하여 강화할 전망이다.
- 또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판례법이 제시한 3가지 요건을 적용하여 비록 구두나 관행으로 이루어진 계약일지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대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입장을 보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mLYKsG>

<https://bit.ly/2NjgnoD>

<https://bit.ly/2ulQxt2>

<2> I.A.E., Inc. v. Shaver, 74 F.3d 768, 775 (7th Cir. 1996).

<3> Beasley v. Commonwealth Edison Co., 2013 WL 4564857, at *7 (N.D. 111. 2013).

미국

**연방청구법원, 자유의 여신상 모조 조각상 사진을
우표에 무단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다**

김혜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이화여대 법학전문석사)

2018년 6월 29일 연방청구법원(Court of Federal Claims)은 자유의 여신상 모조 조각상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우정 공사가 모조 조각상 사진을 우표에 무단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3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정함. 이 판결은 모조 조각상이라 하더라도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다면 독립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것임.

자유의 여신상 모조 조각상의 제작

- Davidson은 입찰을 통해 라스베이거스의 뉴욕-뉴욕 호텔&카지노(New York-New York Hotel & Casino) 앞에 세울 자유의 여신상 모조 조각상(이하 ‘모조 조각상’) 제작자로 선정됨.
- 모조 조각상은 뉴욕항에 있는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이하 ‘뉴욕 자유의 여신상’)의 2/3 크기로 제작될 예정이었음.
- Davidson은 도서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모조 조각상 제작에 참고할 뉴욕 자유의 여신상 사진들을 찾아보았으나 3차원적인 느낌을 주는 사진은 찾지 못했음.
- 결국 Davidson은 모조 조각상 제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진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조각상의 단면 조각들을 만들어 쌓아 붙여 축소 모형을 만든 후 이를 기초로 모조 조각상 제작을 시작함.
 - Davidson은 자신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스팅크스 조각상을 제작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거대한 발포 블록을 대략적인 크기로 자른 후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어 나가는 방식으로 모조 조각상을 제작함.
- Davidson은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의 특징을 고려하여 뉴욕 자유의 여신상 보다 조금 더 현대적이면서 부드러우며 여성적인 얼굴로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함.
 - 그는 장모님의 사진을 참고해서 모조 조각상 얼굴을 조각하였기 때문에 Davidson의 장모님 얼굴 모습이 모조 조각상의 최종 생김새에 크게 영향을 미침.

- Davidson은 조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뉴욕시의 스카이라인’이라는 테마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림.
 - 누구도 Davidson에게 모조 조각상 제작과 관련한 지시를 하는 등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음.
- Davidson은 1996년 10월 4일 모조 조각상을 완성한 다음 2013년 11월 15일 저작권 등록을 완료함.

미국 우정 공사의 모조 조각상 사진 이용

- 미국 우정 공사(United States Postal Service, USPS)는 2007년 처음으로 영원 우표(Forever Stamp)^{<1>}를 발행함.
- 시민들이 기존 영원 우표의 이미지에 실증내기 시작하자, 2008년 우정 공사는 애국심을 상징하는 다른 이미지로 영원 우표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에 착수함.
- 이미 자유의 여신상 이미지 약 20여 종을 이용해 우표를 제작한 바 있었던 우정 공사는 이전에 우표 제작에 이용된 이미지와 다른 독특한 자유의 여신상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PhotoAssist라는 업체에 성조기와 자유의 여신상 사진 여러 유형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함.
- 우정 공사는 여러 종류의 이미지를 검토한 후 우표 발행에 이용될 자유의 여신상과 성조기 이미지 최종 후보를 각 3종으로 압축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Raimund Linke(이하 ‘Linke’)가 찍은 모조 조각상의 얼굴 사진임.
- 우정 공사는 스톡 사진 회사인 Getty Images(이하 ‘Getty’)에 1,500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Linke가 찍은 모조 조각상 사진을 3년 동안 비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음.
 - 당시 우정 공사는 사진 속 조각상이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
- 우정 공사는 우표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Linke가 찍은 자유의 여신상 사진(사실은 모조 조각상 사진)의 사이즈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낸 후 전형적인 영원 우표에 사용되는 문구만을 추가하였을 뿐 그 이외에 추가적인 변경은 가하지 않음.
- 2010년 12월 1일 우정 공사는 성조기 이미지를 담은 우표와 세트로 자유의 여신상 얼굴 사진이 담긴 우표(이하 ‘자유의 여신상 우표’)를 발행함.
- 2011년 3월 18일 우정 공사는 스톡 사진 업체인 Sunipix로부터 이메일을 받고서야 우표에 사용된 이미지가 모조 조각상의 사진임을 알게 됨.

<1>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우편물의 중량만 적혀 있는 우표

- 그러나 우정 공사는 그 이후에도 자유의 여신상 우표 판매를 지속함.
 - 2011년 6월 현재, 우정 공사가 인쇄한 100억 장 이상의 자유의 여신상 우표 중 44억 장이 이미 판매되거나 판매 예정이었음.
 - 2011년 9월에는 11억여 장의 자유의 여신상 우표가 추가 발행되었음.
- 2014년 1월 자유의 여신상 우표는 총 49억 장, 약 21억 달러어치가 판매된 후 단종됨.
 - 우정 공사가 자유의 여신상 우표로부터 얻은 최종 수익은 약 7097만 달러임.

사건의 전개

- 2013년 11월 Davidson은 우정 공사가 자신의 모조 조각상 사진을 무단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에 대하여 우정 공사는 (1) 모조 조각상은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너무나 유사하고 (2) Davidson이 만든 모조 조각상의 독창적인 요소를 무단 이용한 바가 없으며 (3) 설령 모조 조각상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모조 조각상 사진을 이용해 우표를 제작·발행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함.

쟁점

- 모조 조각상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독창적인가
- 우정 공사의 이용이 Davidson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가
- 우정 공사의 이용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연방청구법원의 판단

- 2018년 6월 29일 연방청구법원은 자유의 여신상 모조 조각상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우정 공사가 모조 조각상 사진을 우표에 무단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3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정함.<2>

<2> Robert S. Davidson v. The United States, No. 13-942C (USFC June 29, 2018).

- Davidson은 저작물의 최초 발행 후 5년 이내에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법정추정(statutory presumption)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저작물이 독창적이어서 저작권이 유효함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함.
- Davidson의 뉴욕 자유의 여신상과 구별되는 눈, 턱선, 얼굴형을 가진 보다 부드럽고 여성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됨.
 - 모조 조각상은 독창적인 저작물이고 유효한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됨이 인정됨.
- 모조 조각상과 뉴욕 자유의 여신상은 얼굴이 달라서 서로 구별되는데 우정 공사는 모조 조각상의 얼굴을 우표에 무단 이용하였으므로 결국 모조 조각상의 독창적인 요소를 무단 이용한 것이 인정됨.
- 우정 공사는 Davidson의 모조 조각상의 독창적이고 표현적인 요소인 조각상의 얼굴 거의 전부를 무단 이용한 우표 수십억 장을 인쇄하여 영리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에게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모조 조각상이라 하더라도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다면 독립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것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NhWM8M>

<https://bit.ly/2tZpzXF>

<https://bit.ly/2m3E8Fo>

EU

유럽 의회, 디지털싱글마켓에서의 저작권지침안을 부결시키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2018년 7월 5일 유럽 의회는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지침안을 부결시킴. 동 지침안은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싱 및 보다 광범위한 접근 개선, 언론출판사를 위한 권리 창설,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데이터 마이닝 및 텍스트 마이닝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지침안에 포함된 언론출판사를 위한 권리 창설과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번에 부결된 동 지침안은 수정을 거쳐 9월 다시 유럽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수정된 지침안이 유럽 의회에서 가결되는 경우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 유럽 위원회는 삼자협상을 통하여 최종 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임.

배경

- 2015년 3월 유럽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수립을 위하여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접근성 개선,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디지털 경제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5월 유럽 위원회는 유럽 저작권법 통일을 포함하는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 2015년 7월 유럽 의회는 저작물 이용의 간소화, 공유 저작물의 보존과 확대,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유의 현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지침 개정 결의안을 채택함.
- 2015년 12월 유럽 위원회는 콘텐츠에 관한 접근 보장을 EU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구체적 실천 계획인 ‘현대적인 ,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 (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와 함께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16개의 세부 과제를 발표함.^{<1>}

<1> 16개의 세부 과제 중 첫 번째로 조치로 국경 간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규칙이 제안되었으며 거주국에서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가입한 자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이동에 관한 규칙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이외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나 설립지에 근거하여 부당한 지리적 차단을 하거나 다른 유형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이 2018년 2월 6일과 2018년 2월 27일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 승인을 각각 거쳐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16년 9월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관련 지침 최종안을 발표함.
- 2017년 6월 유럽 의회 역내시장과 소비자보호 위원회(Committee on th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는 언론출판물에 대하여 언론출판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라이선스 거래를 더 복잡하게 하며, 출판사의 수입 증가가 저작자의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새로운 권리의 창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에 제출함.
- 2018년 5월 25일 유럽 이사회 상주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는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의 저작권 지침안^{<2>}에 관하여 합의함. 동 지침안은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싱 및 광범위한 접근 개선, 언론출판사를 위한 권리 창설,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보장, 데이터 마이닝 및 텍스트 마이닝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2018년 6월 20일 동 지침안은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를 통과함.
- 그러나 2018년 7월 5일 동 지침안은 유럽 의회에서 부결됨.
 - 표결에 앞서 동 지침안의 보고관인 악셀 보스(Axel Voss) 의원은 유럽의 예술가들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이 있는 대형 인터넷 플랫폼을 비판하면서 동 지침안을 지지함.
 - 반면 유럽 의회 역내 시장과 소비자보호위원회의 보고관인 캐서린 스티힐러(Catherine Stihler) 의원은 동 지침안에 따라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가되는 모니터링 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우려와 인터넷 사용자에게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간과되었음을 지적함.

동 지침안의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비판

- 동 지침안 제11조에 의하면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출판물을 온라인상 이용하는 경우 유럽연합 정보사회저작권지침에 규정된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이 언론출판사에게 부여됨. 이에 따라 언론출판사는 언론출판물이 온라인상 이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언론출판사의 권리가 지나치게 보호됨에 따라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2>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16) 593 final - 2016/0280(COD).

- 특히 2018년 5월 유럽의 169개 대학과 백여 명의 판사들은 언론출판사에게 저작권접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정보 및 저작물의 거래비용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거짓 정보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함.

- 동 지침안 제13조에 의하면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 등을 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권리자에 의하여 확인된 저작물 등의 이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함.

-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콘텐츠공유서비스제공자가 사실상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EU 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이외에도 모든 권리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나 모든 종류의 저작물과 관련한 효과적인 조치의 마련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또한 시행되어야 하는 효과적인 조치는 실제 저작권 침해와 적법한 패러디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용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위키피디아의 설립자는 동 지침안은 인터넷을 이용자에 대한 자동 감시와 감독을 위한 도구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함.<3>

동 지침안 부결에 대한 평가

- 이번 부결에 대하여 알렉스 보스 의원은 동 지침안에 대하여 제기된 우려들에 대한 추가 검토 후 오는 9월 의회의 표결에 다시 상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인 모질라(Mozilla)의 EU 정책 책임자는 동 지침안에 포함된 인터넷 회사들에 대한 웹 필터링 의무와 링크세(link tax)를 비판하면서 이번 표결을 유럽 시민 뿐 아니라 창조적 분야에서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승리로 평가함.
- 반면 프랑스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작사가작곡가음악출판사협회(SACEM)는 동 지침안과 관련하여 예술가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쟁점이 인터넷 거대업체들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부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국제작가작곡자연맹(CISAC)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힘.

<3>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디지털 권리 보호 단체인 Bits of Freedom은 제1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Save The Meme’이라는 캠페인을 savethememe.net을 통하여 2017년 3월부터 진행하고 있음.

향후 일정

- 이번에 부결된 동 지침안은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의 검토 후 수정을 거쳐 9월 다시 유럽 의회에 상정될 예정임.
- 수정된 지침안이 유럽 의회에서 가결되는 경우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 유럽 위원회는 삼자협상을 통하여 최종 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임. 다만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최종 지침안을 승인하더라도 모든 EU 회원국들에 의한 국내법 이행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4>}

*** 참고 자료**

<https://bit.ly/2NEUO2N>
<https://bit.ly/2NBKg4p>
<https://bbc.in/2MTzLYZ>

<4> 통상적으로 유럽 위원회가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각각 해당 법안에 대하여 검토함. 해당 법안이 유럽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으면 유럽 위원회, 유럽 이사회, 유럽 의회간의 삼자 협상이 개시되며 이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법안은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의 승인을 거쳐 공포됨. 다만 EU 규칙(Regulation)은 회원국의 이행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규범으로 기능하는 반면, EU 지침(Directive)은 그 자체로서는 회원국에서 직접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으며 회원국에서의 국내법적 이행이 필요함.

스위스

법원, 인터넷 접속 제공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할 의무가 없다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영화저작물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사이트를 차단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사실 관계

- 원고는 스위스 영화제작자이며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 된 영화배급업자인 취리히의 프레젠스 필름(Praesens Film)이며, 피고는 스위스 최대 인터넷 접속 제공자인 스위스콤(Swisscom).
- 스위스 사람들은 인터넷 불법 스트리밍 포털(예를 들어 kinox.to)에서 영화나 TV연재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함.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이러한 포털에서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사적 복제에 해당되어 허용됨.
- 영화가 스트리밍 포털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복제되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자는 포털 운영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불법 포털은 대부분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쉽지 않음.
- 원고는 자신들의 영화가 불법으로 복제되어 스트리밍 되고 있는 포털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침해를 경고함. 원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자 인터넷 접속 제공자인 피고에게 영화들이 불법으로 제공되고 있는 해당 포털 사이트의 모든 IP주소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함.
-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차단되어야 할 전체 도메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다른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도 소송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자신들의 영화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트리밍 포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를 직접 경고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피고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따라서 피고는 이용자들이 이들 영화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영화를 연결하고 있는 모든 IP 주소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인터넷 접속 제공자로서 자신의 고객(이용자)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 제삼자의 저작권 침해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IP주소를 차단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함.

베른 상사법원의 판결

- 베른 상사법원은 2018년 6월 16일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피고가 불법 스트리밍 포털 사이트의 IP주소를 차단할 의무는 나오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또한 장래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IP주소를 차단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함.^{<1>}
- 인터넷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제공되는 영화나 TV 연재물 또는 전자책을 사적 이용의 목적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은 허용됨(저작권법 제19조). 다만, 플랫폼 운영자는 불법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해야 됨.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고객이 스트리밍으로 제공되는 영화를 시청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
-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이전에 영화를 저장한 자, 서버를 운영한 자, 포털을 운영한 자 등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함. 비록 제삼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침해에 피고가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
- 또한 피고에게 도메인의 차단을 요구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위반됨. 왜냐하면 원고는 불법 스트리밍 포털의 운영자가 영화를 삭제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임. 즉 원고는 이메일이 아니라 적어도 등기우편을 통해서 포털 운영자에게 침해를 경고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임.
- 따라서 원고는 소송비용과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스위스의 법적 상황

- 스위스는 현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특별법이나 저작권법의 규정이

<1> 베른 상사법원의 판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관련 언론 기사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존재하지 않음. 스위스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니고 유럽연합과 양자조약도 체결하지 않아서 전자상거래지침이나 정보사회저작권지침 등을 국내법으로 이행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도 따를 의무가 없음.

- 따라서 인터넷 접속 제공자를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일반 법률의 원칙(특히 불법행위책임)에 따라서 해결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제39d조)^{<2>}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음.

최근 독일의 유사 판결과 비교

- 불법 스트리밍 포털인 kinox.to 사이트에 이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 달라는 권리자의 청구에 대해서 독일 뮌헨 고등법원은 2018년 6월 14일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사이트 차단을 인정함.^{<3>}
-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사이트 차단 의무는 EU지침과 일치하며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경고를 하지 않고 제공자에게 사이트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함.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인터넷 접속 제공자의 사이트 차단을 부정함으로써 제공자의 부담을 덜어주었지만, 제공자의 사이트 차단을 인정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이 판결은 침해자에 대한 경고조치가 성과가 없는 경우 보충적 수단으로써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 원고가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권리자가 보충적 수단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접속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대법이 이를 허용할지 기대됨.

<2> 저작권법 개정안 제39d조에 따르면 제삼자가 호스트 서비스를 통해서 저작물을 위법하게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 제공자가 권리침해를 통보받은 경우, 호스트 서비스가 권리침해를 조장하는 기술적 기능이나 경제적 목적을 통해서 특별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호스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서 저작물이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음. 제공자는 또한 그러한 권리 침해의 위험을 고려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치만 취할 수 있음.

<3> 저작권 동향 2018년 9호 참조.

*** 참고 자료**

<https://bit.ly/2Njx96G>

<https://bit.ly/2LbMPvn>

<https://bit.ly/2NgxJlO>

<https://bit.ly/2NA3WW8>

<https://bit.ly/2LbixsV>

영국

지식재산청,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다

유현우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최근 영국 지식재산청이 ‘영국 지식재산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영국의 12세 이상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정도와 저작물의 디지털 이용 행태를 추적 조사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조사(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 survey)’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호주와 캐나다 보다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구독 서비스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13년 이후 불법 서비스 이용률은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6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젊은 이용자층에서의 불법 서비스 이용 감소폭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1. 개요

- 2018년 7월 4일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은 ‘영국 지식재산의 날(British IP Day)’을 맞이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조사(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 survey)’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함.
 - 2012년에 처음 조사 및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로 매년 ‘영국 지식재산의 날(British IP Day)’을 기념하여 발표되고 있는 동 보고서는 올해로 발간 8번째를 맞이함.
 - 영국의 저작권 침해 수준을 측정 및 평가하는 동 보고서는 영국 지식재산청의 의뢰로 Kantar Media¹⁾에 의해 수행되었음.
 - 동 보고서는 2018년 3월 한 달 동안 12세 이상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합법·불법적 이용 현황 등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정도(extent of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와 저작물의 디지털 이용 행태를 추적 조사함.

2. 주요 내용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전반적인 저작권 침해 수준은 2017년과 유사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주목할 만 한 점은 불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하는 젊은 이용자들의 수가 감소하고

-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임.
- 영국의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율은 25%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호주의 38%, 캐나다의 26%에 비해 낮은 수치임.
 - 이는 작년에 조사된 수치인 27%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임.
 - 이를 통해 영국의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수준은 호주와 캐나다 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호주, 캐나다는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세 나라는 동일한 방법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 영국 내 많은 콘텐츠 이용자들이 보통 월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구독서비스(subscription services)를 통해 온라인상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16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연령층의 조사 대상 인원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최소한 하나의 구독서비스(subscription services)에 가입하여 정당한 비용지불을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콘텐츠 이용자들이 구독서비스(subscription services) 등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로는 서비스의 편리성과 품질 외에 바이러스(viruses) 및 멀웨어(malware), 스파이웨어(spyware) 등의 악성코드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3년 이후 약 5%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경향은 젊은 이용자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16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연령층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비율은 2015년에 비해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비율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만 전체 저작권 침해의 2/3 이상이 3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저작권 침해의 58%가 남성에게 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콘텐츠 이용자들의 44%는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유로 '무료(free)'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41%의 이용자들이 '편리함(convenience)'을 이유로 들었음.
 - 응답자의 22%는 합법적인 서비스가 보다 저렴해 진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21%는 합법적인 서비스와 불법적인 서비스 사이의 명확성이 확보된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 콘텐츠 유형별 침해 수준은 TV 프로그램이 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21%, 소프트웨어 20%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음악 관련 콘텐츠의 침해 수준은 19%, 영화 관련 콘텐츠의 침해 수준은 19%, 비디오 게임의 침해 수준은 16%로 나타났음.
- 작년 침해율 26%로 1위를 차지했던 소프트웨어는 20%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영화 관련 콘텐츠가 21%에서 19%로 소폭 감소한 반면 TV 프로그램은 22%에서 23%로 소폭 증가하였고 음악 관련 콘텐츠도 18%에서 19%로 소폭 증가하였음.
- 한편 스포츠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율은 올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조사되었음.

평가 및 전망

- 런던 시경 지식재산 범죄 담당(the City of London’s 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임시 수사부장(temporary detective chief) 인 Nick Court는 많은 수의 콘텐츠 이용자들이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subscription streaming services)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젊은 이용자층에서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콘텐츠 이용이 덜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함.
- 이에 반해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무역 단체 연합인 지식재산 연맹(Alliance for IP)의 사무총장 Eddy Leviten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저작권 침해율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모든 종류의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함.
- 올해 초 온라인 분석 업체 INCOPRO에 의해 작성된 ‘호주 사이트 차단 효율성 보고서(The Australian Site-Blocking Efficacy Report)’에 따르면 작년 한해 호주에서의 불법 복제 및 스트리밍을 이용한 콘텐츠 이용이 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7년 8월에는 법원에서 차단 명령을 내린 ISP 사이트 59개에 대한 트래픽이 5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영국 지식재산청의 조사 결과도 이와 같은 보고서 및 조사 결과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https://bit.ly/2JqDOd8>

<https://bit.ly/2NjHZtp>

<https://bit.ly/2KO1SrM>

일본

CODA,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광고 게재 제한 본격화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최근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운영 자금원이 되는 광고 게재 억지 대책이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는 악질적 행위를 억제하는 유효한 대책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광고 관련 3단체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광고 게재 억지 요청문과 저작권 침해 사이트 리스트를 송부하고 협력을 구하고 있음. 이에 더해 CODA는 보다 실효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광고 게재 억지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광고 관련 3단체와 정기적 협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 대응책 강화·개선에 돌입함.

배경

- 오늘날에는 영상, 음악, 출판물 등의 불법 복제물을 게재하는 해적판 사이트나 그러한 불법 복제물에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리치사이트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규모가 일본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악질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취하기 곤란한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운영 자금원이 되는 광고 게재에 대한 대책이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는 악질적 행위를 억제하는 유효한 대책으로서 주목을 받음.
 -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에 따르면, 이미 영국 등 일부 국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자금원 차단을 위해 광고 게재 억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CODA의 대응

- CODA는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 대책의 하나로서 광고 게재 억지 대책을 실시함.
- 2017년 11월에는 홍콩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리스트(Infringing Website List, IWL) 사업에 참가함.
 - 홍콩의 IWL 사업은 권리자 등 IWL 참가자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광고주나 광고대리점 등에 공유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광고 게재를 억지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자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됨. 2017년 10월 홍콩의 50사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광고를 중지하였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접속이 14% 감소된 것으로 발표됨.

- IWL 사업은 2013년 영국에서 최초 도입된 것으로서 향후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 침해 대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

- 올해 2월에는 일본광고주협회(JAA), 일본광고업협회(JAAA), 일본인터넷광고협회(JIAA) (이하 ‘광고 관련 3단체’)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의 광고 게재 억지 요청문과 저작권 침해 사이트 리스트(이하 ‘일본판 IWL’)를 송부하고 협력을 구함.

- 저작권 관련 단체가 다수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존재하고 권리자로부터의 삭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악질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리스트를 작성함.

- 일본판 IWL은 사분기마다 리스크를 갱신할 계획임.

- 지난 6월 8일에는 일본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광고 게재 대상에서 배제하는 보다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고 관련 3단체와 정기적 협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우선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현황과 경향, 저작권 침해 사이트 리스트에 의거한 대책의 유효성이나 개선책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 한편 2018년에는 자동 콘텐츠 감시·삭제 센터^{<1>}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와 함께 게재된 광고를 수집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구현할 수 있다면 수집된 정보를 광고 관련 3단체와 공유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임.

광고업계의 대응

- 많은 광고주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광고비가 지급되는 것 또는 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바라지 않음.

- 그러나 운용형 광고^{<2>} 시장이 확대된 오늘날에는 광고 전달 경로가 복잡화·다양화되어 작은 부주의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같이 광고주의 뜻에 반하는 사이트에 광고가 전송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광고 게재 대상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배제하는 것이 과제임.

<1> CODA는 자동 콘텐츠 감시·삭제 센터를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권리자로부터의 삭제 요청을 각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 거의 100%의 삭제 실적을 유지하고 있음.

<2> 운용형 광고는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검색 경로나 검색어 같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광고를 띄워주는 방식의 광고를 말함. 클릭 수에 따라 지급하는 광고비가 다름.

- 최근 인터넷 광고 출고·전송의 효율화·자동화가 진행되고 다수의 광고사업자가 참가·연계하여 에코 시스템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운용형 광고 시장이 확대하였음.
- 광고 관련 3단체는 CODA로부터 일본판 IWL을 제공받아 이를 회원사와 공유함.
- 광고 관련 3단체의 회원사는 일본판 IWL을 토대로 악질성 높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 광고주나 광고회사 등은 광고 게재 대상을 지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광고 상품·서비스를 선택하고, 광고 플랫폼 제공자 등은 광고 게재 대상의 품질을 관리함.
- JIAA는 인터넷 광고가 디지털 콘텐츠를 지지하는 경제적 기반임을 인식하고 부정행위 배제 및 건전성 유지에 힘쓸 것을 선언함.
 - 회원사의 문제인식이나 대책 실행을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나 실효적 대응책을 검토해 나감.
- 또한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를 설치하고 광고 전송 플랫폼 사업자가 적절한 광고 게재 대상을 선정하도록 ‘광고 전송 가이드라인’(가칭) 책정을 검토함.

평가

-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운영자를 알 수 없거나 위법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광고 게재 억지를 통해 사이트 운영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광고 관련 단체가 유연하고 기동적으로 광고 게재 억지 등의 자주적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책은 실행을 충분히 조사한 후 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협조·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자료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171>
www.itmedia.co.jp/news/articles/1806/08/news090.html
<https://bit.ly/2NMIZay>
<http://www.coda-cj.jp/news/detail.php?id=150>
<http://www.coda-cj.jp/s/180620b.pdf>
<http://www.coda-cj.jp/s/180620c.pdf>

국내

대법원, 광화문 모형의 저작물성 여부 긍정

김세창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 기초사실

- 원고는 프로모션 아이템의 개발 및 제조,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송례문, 광화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꽃는 등의 방법으로 입체로 조립할 수 있는 3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상표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권자임.
- 원고는 2008. 8. 20. 피고 F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 수입, 소싱하는 관련제품 공급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공급한 상품 이외에 원고의 승낙 없이는 다른 회사의 상품이나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음
- 피고들은 원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2. 25. 퇴직한 후, 피고 A과 B는 2012. 1. 20.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피고 회사는 송례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꽃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 입체 조립할 수 있는 3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 판매하였음

☞ 판결요지

-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원고의 광화문 모형은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며, 이것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함.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함.

- 원고의 광화문 모형의 전체크기와 비율, 지붕과 처마, 문지기 및 누각의 창문 등에서 나타난 창작적인 표현들이 피고들의 승례문 모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광화문 모형과 피고들의 승례문 모형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음.

-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광화문 모형을 개발 또는 판매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들의 승례문 모형을 제작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광화문 모형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고, 피고들의 승례문 모형과 원고의 광화문 모형 사이의 유사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승례문 모형은 원고의 광화문 모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함

- 그러므로, 피고들이 승례문 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광화문 모형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